

제 조 위 탁 계 약 서

○○합자회사(이하 '갑"이라 한다)와 ○○유한회사(이하 '을'이라 한다)는, 갑의 제품의 제조 등(이하 '제품'이라 한다.)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- 제1조(목 적)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, 포장, 보관, 운송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,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.
- 제2조(원재료 등의 공급) ①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및 포장재료를 을에게 공급한다.
 - ② 을은 공급받은 원재료로서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한다.
 - ③ 원재료의 비용, 포장재료, 잉여공급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- **제3조(업무지시)** 갑은 ○월 ○일 까지 을에 대해 다음 달 제조 제품의 수량, 제품의 포장량, 포장모양, 보관량을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포장재료를 공급한다.
- 제4조(기술지도) 갑은 전문기술원을 파견하고, 을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, 가공, 포장, 운송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.
- **제5조(자료제출의무)** ① 을은 미리 갑의 지시보고서를 매월 일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.
 - ②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을은 즉시 그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.
- 제6조(위탁료) 위탁료는 제품 1개당 금 ○○ 원으로 하고, 매월 ○○ 일에 마감 한 을의 청구서에 의거 다음 달 ○○ 일까지 갑은 을에 대해 현금, 약속어음으 로 지급하기로 한다.
- 제7조(비용부담) ①을은 을의 원료창고에서 갑이 공급한 원재료, 포장재료를 수령한 뒤 제품을 출고하기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.
 - ② 제 1항 이외의 부담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8조(운송방법) 을이 제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,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,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.
- 제9조(담보책임) 을이 제품의 품질, 규격, 양, 포장모양, 운송방법의 하자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반품, 교환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, 그 손해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- 제10조(손해배상) 을이 갑이 지시한 납기에 맞추지 못하고 그외 그 계약 생물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는, 갑은 아무런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그 계 해제하고 지급한 원재료 및 이에 따라 제조, 가공된 모든 것의 즉시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보수의무)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갑이 공급한 재료가 줄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했을 때는, 을은 즉시 갑에 대해서 그 상황을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.
- 제12조(해제권의 유보) 갑이 시장경제의 변동 등에 의해, 그 제품의 제조를 정지하거나 제조에 제한을 가할 때는 을은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기로 한다.
- 제13조(비밀의 유지) ① 을은 이 계약의 수행으로 알게 된 갑의 비밀을 타인에 게 누설해서는 안된다.
 - ② 을이 전 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, 갑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위 양도의 금지) 을은 이상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제15조(유효기간)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년으로 한다.
 -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자 서명하고 날인한 뒤에 1통씩 보관한다.

2000년 0월 0일

제 조	주	소					
구 위 탁 자	성 또 상	명 는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제 조	주	소					
수 탁 자	성 또 상	명 는 호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